



식품의 비건(vegan)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202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표시 광고 정책 과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식품등에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올바른 표시·광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기술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2184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등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에 적용된다.

III. 판단 기준

① 정의

‘비건’ 식품이란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이거나 동물에서 유래한 원재료(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포함, 이하 같다)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식품등을 말한다.

② 원재료 기준

동물성이거나 동물에서 유래한 원재료를 첨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재료 명칭 만으로 동물성 또는 동물 유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물성이 들어간 식품등(배지 포함)에서 분리 또는 배양한 미생물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한다.

* 표시예 :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은 젓갈이 들어간 김치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은 배양과정에 유당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생물 배양 시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원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기준·규격 인정 등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품(제품 개발 과정 포함)에 대하여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조·관리 기준

비건 식품등의 제조·조리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조리라인, 원재료 보관 등 제조·조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 원재료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조리 라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조리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 혼입 방지를 위한 세척 등 표준작업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 원재료를 조리한 기름을 사용하거나(동물성 기름을 사용한 경우 포함),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 물질을 이용하여 정제나 여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표시·광고

제①, 제② 및 제③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비건’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동물성 또는 동물유래 원재료의 비의도적 혼입이 있더라도 제③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가 선행되는 경우 ‘비건’ 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에 동물성 또는 동물 유래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③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가 선행되는 경우 ‘비건’ 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예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달걀 혼입가능성 있음”, “새우 혼입 가능”

⑤ 실증 제출 자료

- 1) 제품의 표시 또는 광고 내용(사진 첨부)
- 2) 원재료 및 제조방법 설명서,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식품등인 경우 수입신고서) 등
- 3) 원재료가 동물성 또는 동물 유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원재료 명칭 만으로 동물성 또는 동물 유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4)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동물실험 여부
- 5) 제③에 따른 제조·관리기준서